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61
----------	------

발의연월일 : 2020. 9. 7.

발의자 : 한병도 · 김승원 · 이형석

오영환 · 이상현 · 권칠승

김민석 · 정일영 · 허영

박재호 · 박상혁 · 이원택

신영대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분야 공동주택공사 건축·전기공사의 경우 부실 시공방지 등을 위해 감리자를 사업수행능력평가방식에 따라 선정하고 있으나 소방시설공사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공사임에도 대부분 최저가 수의계약방식으로 감리자를 선정하고 있음.

그 결과 발주자와 소방공사감리자는 갑·을 종속 관계가 형성되어 감리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어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분야 공동주택공사의 경우에도 사업수행능력평가방식 방식에 따라 소방감리자를 선정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안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 ·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그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시 · 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제1항 중 “공고”를 “공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설계 · 감리업자를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7조제6항에 따른 감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6항·제7항, 제26

조의2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  
다.

## 신·구조문대비표

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을 하려면 기술능력, 경영능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설계·감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계·감리업자의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설계·감리업자를 선정---.

② 시·도지사는 제17조제6항에 따른 감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  
-----.